

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-8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0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친환경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친환경 급식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친환경 급식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타법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 및 「알기 쉬운 법령기준」에 따른 법률용어의 순화를 반영하여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(안 제1조)

- 1) 기존의 목적에 도·농간의 지역교류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한다는 목적을 추가

나. 정의(안 제2조)

- 1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에 따른 사업의 정의 내용 추가
- 2) “친환경 학교급식 프로그램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
- 3)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, 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 및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개정에 따라 법규명을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 및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으로 변경함
- 4) “~이라 함은” 용어순화를 반영하여 “~이란”으로 변경함

다. 경비의 지원 등(안 제5조 4항 신설)

- 1) "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과 연계하여 "친환경 학교급식 프로그램"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라.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8조)

- 1)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우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식품안전추진반장을 해당 직무수행자인 "위생과장"으로 변경

마. 심의위원회의 기능(안 제9조)

- 1) 심의위원회 기능으로서 "친환경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지도"에 관한 사항 추가

바. 지도점검 및 정보공개

- 1)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"정보공개에 관한 규정"을 추가함

3. 주요 토의과제

" 없음 "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학교급식법」 제5조, 제8조, 제9조
- 2) 「학교급식법 시행령」 및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
- 3)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 및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2. 9. 6 ~ 9. 26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(감사담당관) : 원안 동의
- 3) 자치법규 성별영향 평가 결과(가정복지과) : 원안 동의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
- 5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것을”을 “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, 도·농간 지역 교류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학교급식 등”이라 함은”을 ““학교급식 등”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급식경비”라 함은”을 ““급식경비”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“우수 식재료”라 함은”을 ““우수 식재료”란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

제2조제3호다목 중 “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”을 “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“지원대상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지원대상”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“급식지원센터”라 함은”을 ““급식지원센터”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“친환경 학교급식 프로그램”이란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.

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과 연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제2항제1호 중 “식품안전추진반장”을 “위생과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친환경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제11조의 제목 “지도·점검”을 “지도·점검 및 정보공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가.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</p> <p>나. (생략)</p> <p>다. 「축산법」 및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</p> <p>라. (생략)</p> <p>마. 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(원양산 포함)</p> <p>바. ~ 사. (생략)</p> <p>4. “지원대상”이라 함은 제4조에 해당하는 학교, 유치원 및 시설을 말한다.</p> <p>5. “급식지원센터”라 함은 학교급식 등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,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·감독하며, 생산 및 물류, 공급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제5조(경비의 지원 등) ①~③ (생략)</p>	<p>가.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-----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----- ----- -----</p> <p>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바. ~ 사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“지원대상”이란 ----- -----.</p> <p>5. “급식지원센터”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6. “친환경 학교급식 프로그램”이란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.</p> <p>제5조(경비의 지원 등)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8조(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.</p> <p>1. 당연직 : 부구청장, 주민생활국장, 기획예산과장, 가정복지과장, <u>식품안전추진반장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③ ~ ⑧ (생략)</p> <p>제9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제11조(지도·점검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④ <u>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과 연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8조(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위생과장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친환경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제11조(지도·점검 및 정보공개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